#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23고단167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전계광(기소), 최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김한수, 서경원

판결선고 2023.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사내이사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등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 1. C 기숙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자신의 처인 D 소유의 하남시 C 기숙사 E호(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고 함)에 대해 위 D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아들이 위 사건 기숙사를 이용하도록 하던 중, 2020. 6. 26.경 피해 회사를 설립하게 되자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보증금 등을 피해 회사에게 부 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 피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해 보증금 5,000,000원, 월세 450,000원(부가세 별도)의 부동산 월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6.경 하남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기숙사의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위 D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8,956,530원을 이 사건 기숙사의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2. 2020.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예금계좌에서 위 D과 H에게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원천징수액 공제하고 각 8,703,000원씩 합계 17,406,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피고인의 개인 예금 계좌로 되돌려받아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3.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D에게 분양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액 공제하고 67,690,000원을 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개인 명의로 계약한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 1. I,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 1. 법인계좌거래내역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사가 피고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회사이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별 지

# 범 죄 일 람 표

순번	범행일시	명목	피해액(원)	비고
1	2020. 7. 16.경	보증금	5,000,000	
2	2020. 7. 29.경	관리비	131,580	
3	2020. 7. 30.경	월세	495,000	
4	2020. 8. 29.경	관리비	149,260	
5	2020. 8. 31.경	월세	495,000	
6	2020. 9. 24.경	관리비	163,490	
7	2020. 9. 29.경	월세	495,000	
8	2020. 10. 26.경	월세	495,000	
9	2020. 10. 28.7형	관리비	136,800	
10	2020. 11. 30.경	관리비	126,670	
11	2020. 11. 30.경	월세	495,000	
12	2020. 12. 30.경	월세	495,000	
13	2020. 12. 30.경	관리비	126,750	
14	2021. 2. 1.경	관리비	151,980	
14회에 걸쳐 총 8,956,530원 업무상횡령				